

e편한세상 부천 어반스퀘어 민영주택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32-323-1649

주택유형	규제지역 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1년	없음	미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4.23.(목)	2026.06.09.(화)	2026.06.15.(월)	2026.06.18.(목)	2026.06.20.(토) ~2026.06.21.(일)	2026.06.27.(토)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 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잔여세대 (무순위)	○	○	X	X	X	X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6.09.(화)이며, (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152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4.23.(목)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152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6.06.15.(월)	2026.06.18.(목)	2026.06.20.(토)~2026.06.21.(일)	2026.06.27.(토)
방 법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PC·모바일) 청약홈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49번지)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경기도 부천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 내 6억원 이상의 주택 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026.05.13.)로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 공급위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 일대(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 지상 38층, 2개 단지, 13개 동, 총 1,649세대 중 잔여 485세대
- 입주시기 : 2029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타입)	잔여 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동	호
민영 주택	2026910152	01	059.9000A	59A	186	104	101, 104, 201, 202, 204, 301, 302, 401, 404, 501, 601, 701, 804, 902, 904, 1001, 1002, 1101, 1104, 1201, 1202, 1204, 1301, 1302, 1401, 1402, 1404, 1501, 1804, 2001, 2101, 2201, 2202, 3104, 3504
						105	102, 202, 301, 401, 402, 502, 701, 702, 801, 802, 901, 1501, 1502, 1702, 1801, 1802, 2102, 2201, 2202, 2301, 2302, 2501, 2601, 2602, 3501, 3502
						106	201, 202, 301, 302, 401, 402, 501, 602, 701, 801, 802, 901, 902, 1001, 1002, 1102, 1201, 1202, 1302, 1401, 1501, 1801, 1802, 1901, 2001, 2202, 2301, 2302, 2402, 2501, 2601, 2701, 2801, 2802, 2901, 3701, 3801
						107	204, 403, 404, 503, 604, 703, 903, 904, 1104, 1203, 1204, 1304, 1403, 1503, 1603, 1604, 1703, 1904, 2103, 2203, 2204, 2304, 2503, 2504, 2603, 2604, 2703, 2704, 2804, 2903, 3704, 3804
						201	203, 204, 303, 304, 401, 501, 603, 701, 703, 804, 1001, 1004, 1101, 1103, 1104, 1203, 1204, 1304, 1404, 1501, 1601, 1604, 1701, 1801, 1901, 2403, 2404, 2701
						204	202, 204, 302, 304, 502, 504, 604, 702, 804, 902, 1002, 1004, 1102, 1204, 1502, 1702, 1704, 1802, 1904, 2002, 2104, 2204, 2504, 2602, 2704, 2802, 3704, 3804
		02	059.7700B	59B	45	104	203, 503, 903, 1103, 1503, 1703, 1803, 2103, 3203, 3303, 3403, 3503
						201	202, 302, 402, 602, 702, 1202, 1402, 1902
						204	201, 203, 301, 401, 403, 503, 603, 703, 801, 1001, 1003, 1101, 1103, 1301, 1403, 1503, 1601, 2003, 2103, 2201, 2203, 2301, 2603, 2701, 2703
		03	074.6300A	74A	117	102	101, 103, 201, 203, 301, 303, 401, 501, 503, 603, 701, 801, 901, 1003, 1101, 1203, 1401, 1403, 1501, 1503, 1601, 1701, 1703, 1801, 1803, 1901, 2001, 2003, 2101, 2103, 2901, 2903
						103	101, 201, 303, 403, 501, 603, 701, 801, 803, 903, 1001, 1003, 1101, 1103, 1203, 1301, 1303, 1401, 1403, 1501, 1503, 1603, 1701, 1803, 1901, 1903, 2001, 2101, 2201, 2303, 2401, 2403, 2501, 2601, 2603, 2701, 2703, 2801, 3003
						301	201, 301, 303, 503, 601, 603, 801, 1003, 1103, 1203, 1301, 1303, 1403, 1501, 1601, 1701, 2101, 2103, 2301, 2303, 2401, 3203
						302	201, 203, 301, 303, 401, 403, 601, 603, 801, 903, 1103, 1201, 1301, 1303, 1401, 1601, 1703, 2101, 2301, 2401, 2403, 2503, 2901, 3801
		04	074.3000B	74B	68	102	202, 302, 502, 602, 702, 802, 1002, 1202, 1302, 1502, 1602, 1702, 2002, 2102, 2802
						103	202, 302, 402, 502, 602, 702, 802, 902, 1002, 1102, 1202, 1402, 1502, 1702, 1802, 2002, 2402, 2502, 2602, 2702, 2802, 3002, 3802
						301	502, 802, 902, 1002, 1102, 1302, 1402, 1602, 1802, 1902, 2002, 2102, 2302
						302	202, 302, 602, 902, 1002, 1202, 1302, 1402, 1502, 1602, 2002, 2102, 2302, 2502, 2802, 2902, 3702
		05	084.3400A	84A	45	102	104, 304, 504, 2004
						103	204, 404, 504, 2504
						105	104, 304, 504, 3804
						106	104, 204, 304, 404, 504, 3804
						107	101, 201, 301, 501, 3801
						202	201, 202, 301, 402, 501, 2401, 2402
						203	202, 301, 402, 502
						301	204, 205, 304, 305, 504, 2704
		06	084.6000B	84B	24	302	304, 305, 404, 3004, 3005
						102	305, 405, 505, 2005
						103	205, 305, 405, 505, 605, 2505
						105	203, 303, 403, 503, 3803
						106	203, 303, 403, 503, 3803
		합계					485

약식 표기 (타입)	동 구분 (라인)	공급개요		분양가격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층 구분	해당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총 분양가격	계약시	계약후 30일 이내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2026.09.28.	2027.03.26.	2027.09.27.	2028.04.26.	2028.09.26.	2029.03.26.	입주지정일
59A	104동 1,2호 201동 3,4호	1층	1	316,265,250	486,234,750	802,500,000	10,000,000	30,125,000	80,250,000	80,250,000	80,250,000	80,250,000	80,250,000	80,250,000	280,875,000
		2층	4	323,004,360	496,595,640	819,600,000	10,000,000	30,980,000	81,960,000	81,960,000	81,960,000	81,960,000	81,960,000	81,960,000	286,860,000
		3-5층	6	329,704,060	506,895,940	836,600,000	10,000,000	31,830,000	83,660,000	83,660,000	83,660,000	83,660,000	83,660,000	83,660,000	292,810,000
		6-10층	9	333,093,320	512,106,680	845,200,000	10,000,000	32,260,000	84,520,000	84,520,000	84,520,000	84,520,000	84,520,000	84,520,000	295,820,000
		11-20층	16	336,443,170	517,256,830	853,700,000	10,000,000	32,685,000	85,370,000	85,370,000	85,370,000	85,370,000	85,370,000	85,370,000	298,795,000
		21층-30층	5	339,793,020	522,406,980	862,200,000	10,000,000	33,110,000	86,220,000	86,220,000	86,220,000	86,220,000	86,220,000	86,220,000	301,770,000
	104동 4호 201동 1호	1층	1	314,688,850	483,811,150	798,500,000	10,000,000	29,925,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279,475,000
		2층	1	321,388,550	494,111,450	815,500,000	10,000,000	30,775,000	81,550,000	81,550,000	81,550,000	81,550,000	81,550,000	81,550,000	285,425,000
		3-5층	3	328,048,840	504,351,160	832,400,000	10,000,000	31,620,000	83,240,000	83,240,000	83,240,000	83,240,000	83,240,000	83,240,000	291,340,000
		6-10층	4	331,398,690	509,501,310	840,900,000	10,000,000	32,045,000	84,090,000	84,090,000	84,090,000	84,090,000	84,090,000	84,090,000	294,315,000
		11-20층	10	334,748,540	514,651,460	849,400,000	10,000,000	32,470,000	84,940,000	84,940,000	84,940,000	84,940,000	84,940,000	84,940,000	297,290,000
		21층-30층	1	338,098,390	519,801,610	857,900,000	10,000,000	32,895,000	85,790,000	85,790,000	85,790,000	85,790,000	85,790,000	85,790,000	300,265,000
	105동 1,2호 106동 1,2호 107동 3,4호 204동 2,4호	31층 이상	2	341,448,240	524,951,760	866,400,000	10,000,000	33,320,000	86,640,000	86,640,000	86,640,000	86,640,000	86,640,000	86,640,000	303,240,000
		1층	1	308,462,070	474,237,930	782,700,000	10,000,000	29,135,000	78,270,000	78,270,000	78,270,000	78,270,000	78,270,000	78,270,000	273,945,000
		2층	6	315,004,130	484,295,870	799,300,000	10,000,000	29,965,000	79,930,000	79,930,000	79,930,000	79,930,000	79,930,000	79,930,000	279,755,000
		3-5층	16	321,585,600	494,414,400	816,000,000	10,000,000	30,800,000	81,600,000	81,600,000	81,600,000	81,600,000	81,600,000	81,600,000	285,600,000
		6-10층	23	331,398,690	509,501,310	840,900,000	10,000,000	32,045,000	84,090,000	84,090,000	84,090,000	84,090,000	84,090,000	84,090,000	294,315,000
		11-20층	33	334,748,540	514,651,460	849,400,000	10,000,000	32,470,000	84,940,000	84,940,000	84,940,000	84,940,000	84,940,000	84,940,000	297,290,000
59B	104동 3호 201동 2호	21층-30층	36	338,098,390	519,801,610	857,900,000	10,000,000	32,895,000	85,790,000	85,790,000	85,790,000	85,790,000	85,790,000	85,790,000	300,265,000
		31층 이상	8	341,448,240	524,951,760	866,400,000	10,000,000	33,320,000	86,640,000	86,640,000	86,640,000	86,640,000	86,640,000	86,640,000	303,240,000
		2층	2	317,526,370	488,173,630	805,700,000	10,000,000	30,285,000	80,570,000	80,570,000	80,570,000	80,570,000	80,570,000	80,570,000	281,995,000
		3-5층	3	324,147,250	498,352,750	822,500,000	10,000,000	31,125,000	82,250,000	82,250,000	82,250,000	82,250,000	82,250,000	82,250,000	287,875,000
		6-10층	3	327,457,690	503,442,310	830,900,000	10,000,000	31,545,000	83,090,000	83,090,000	83,090,000	83,090,000	83,090,000	83,090,000	290,815,000
		11-20층	7	330,768,130	508,531,870	839,300,000	10,000,000	31,965,000	83,930,000	83,930,000	83,930,000	83,930,000	83,930,000	83,930,000	293,755,000
	204동 1,3호	21층-30층	1	334,078,570	513,621,430	847,700,000	10,000,000	32,385,000	84,770,000	84,770,000	84,770,000	84,770,000	84,770,000	84,770,000	296,695,000
		31층 이상	4	337,389,010	518,710,990	856,100,000	10,000,000	32,805,000	85,610,000	85,610,000	85,610,000	85,610,000	85,610,000	85,610,000	299,635,000
		2층	2	311,260,180	478,539,820	789,800,000	10,000,000	29,490,000	78,980,000	78,980,000	78,980,000	78,980,000	78,980,000	78,980,000	276,430,000
		3-5층	4	317,723,420	488,476,580	806,200,000	10,000,000	30,310,000	80,620,000	80,620,000	80,620,000	80,620,000	80,620,000	80,620,000	282,170,000
		6-10층	5	327,457,690	503,442,310	830,900,000	10,000,000	31,545,000	83,090,000	83,090,000	83,090,000	83,090,000	83,090,000	83,090,000	290,815,000
74A	102동 1,3호 103동 1,3호	11-20층	7	330,768,130	508,531,870	839,300,000	10,000,000	31,965,000	83,930,000	83,930,000	83,930,000	83,930,000	83,930,000	83,930,000	293,755,000
		21층-30층	7	334,078,570	513,621,430	847,700,000	10,000,000	32,385,000	84,770,000	84,770,000	84,770,000	84,770,000	84,770,000	84,770,000	296,695,000
		1층	3	363,084,330	558,215,670	921,300,000	10,000,000	36,065,000	92,130,000	92,130,000	92,130,000	92,130,000	92,130,000	92,130,000	322,455,000
		2층	3	370,808,690	570,091,310	940,900,000	10,000,000	37,045,000	94,090,000	94,090,000	94,090,000	94,090,000	94,090,000	94,090,000	329,315,000
		3-5층	8	378,533,050	581,966,950	960,500,000	10,000,000	38,025,000	96,050,000	96,050,000	96,050,000	96,050,000	96,050,000	96,050,000	336,175,000
		6-10층	12	382,395,230	587,904,770	970,300,000	10,000,000	38,515,000	97,030,000	97,030,000	97,030,000	97,030,000	97,030,000	97,030,000	339,605,000
	301동 1,3호 302동 1호	11-20층	29	386,257,410	593,842,590	980,100,000	10,000,000	39,005,000	98,010,000	98,010,000	98,010,000	98,010,000	98,010,000	98,010,000	343,035,000
		21층-30층	16	390,119,590	599,780,410	989,900,000	10,000,000	39,495,000	98,990,000	98,990,000	98,990,000	98,990,000	98,990,000	98,990,000	346,465,000
		2층	2	378,217,770	581,482,230	959,700,000	10,000,000	37,985,000	95,970,000	95,970,000	95,970,000	95,970,000	95,970,000	95,970,000	335,895,000
		3-5층	5	386,099,770	593,600,230	979,700,000	10,000,000	38,985,000	97,970,000	97,970,000	97,970,000	97,970,000	97,970,000	97,970,000	342,895,000
		6-10층	6	390,040,770	599,659,230	989,700,000	10,000,000	39,485,000	98,970,000	98,970,000	98,970,000	98,970,000	98,970,000	98,970,000	346,395,000
		11-20층	12	393,981,770	605,718,230	999,700,000	10,000,000	39,985,000	99,970,000	99,970,000	99,970,000	99,970,000	99,970,000	99,970,000	349,895,000
	302동 3호	21층-30층	9	397,883,360	611,716,640	1,009,600,000	10,000,000	40,480,000	100,960,000	100,960,000	100,960,000	100,960,000	100,960,000	100,960,000	353,360,000
		31층 이상	2	401,824,360	617,775,640	1,019,600,000	10,000,000	40,980,000	101,960,000	101,960,000	101,960,000	101,960,000	101,960,000	101,960,000	356,860,000
		2층	1	372,582,140	572,817,860	945,400,000	10,000,000	37,270,000	94,540,000	94,540,000	94,540,000	94,540,000	94,540,000	94,540,000	330,890,000
		3-5층	2	380,345,910	584,754,090	965,100,000	10,000,000	38,255,000	96,510,000	96,510,000	96,510,000	96,510,000	96,510,000	96,510,000	337,785,000
		6-10층	2	391,971,860	602,628,140	994,600,000	10,000,000	39,730,000	99,460,000	99,460,000	99,460,000	99,460,000	99,460,000	99,460,000	348,110,000
		11-20층	3	395,952,270	608,747,730	1,004,700,000	10,000,000	40,235,000	100,470,000	100,470,000	100,470,000	100,470,000	100,470,000	100,470,000	351,645,000
		21층-30층	2	399,893,270	614,806,730	1,014,700,000	10,000,000	40,735,000	101,470,000	101,470,000	101,470,000	101,470,000	101,470,000	101,470,000	355,145,000

74B	102동 2호 103동 2호	2층	2	364,897,190	561,002,810	925,900,000	10,000,000	36,295,000	92,590,000	92,590,000	92,590,000	92,590,000	92,590,000	92,590,000	324,065,000
		3-5층	5	372,503,320	572,696,680	945,200,000	10,000,000	37,260,000	94,520,000	94,520,000	94,520,000	94,520,000	94,520,000	94,520,000	330,820,000
		6-10층	9	376,286,680	578,513,320	954,800,000	10,000,000	37,740,000	95,480,000	95,480,000	95,480,000	95,480,000	95,480,000	95,480,000	334,180,000
		11-20층	13	380,109,450	584,390,550	964,500,000	10,000,000	38,225,000	96,450,000	96,450,000	96,450,000	96,450,000	96,450,000	96,450,000	337,575,000
		21층-30층	8	383,892,810	590,207,190	974,100,000	10,000,000	38,705,000	97,410,000	97,410,000	97,410,000	97,410,000	97,410,000	97,410,000	340,935,000
		31층 이상	1	387,715,580	596,084,420	983,800,000	10,000,000	39,190,000	98,380,000	98,380,000	98,380,000	98,380,000	98,380,000	98,380,000	344,330,000
	301동 2호	3-5층	1	379,951,810	584,148,190	964,100,000	10,000,000	38,205,000	96,410,000	96,410,000	96,410,000	96,410,000	96,410,000	96,410,000	337,435,000
		6-10층	3	383,813,990	590,086,010	973,900,000	10,000,000	38,695,000	97,390,000	97,390,000	97,390,000	97,390,000	97,390,000	97,390,000	340,865,000
		11-20층	7	387,715,580	596,084,420	983,800,000	10,000,000	39,190,000	98,380,000	98,380,000	98,380,000	98,380,000	98,380,000	98,380,000	344,330,000
		21층-30층	2	391,577,760	602,022,240	993,600,000	10,000,000	39,680,000	99,360,000	99,360,000	99,360,000	99,360,000	99,360,000	99,360,000	347,760,000
	302동 2호	2층	1	366,670,640	563,729,360	930,400,000	10,000,000	36,520,000	93,040,000	93,040,000	93,040,000	93,040,000	93,040,000	93,040,000	325,640,000
		3-5층	1	374,276,770	575,423,230	949,700,000	10,000,000	37,485,000	94,970,000	94,970,000	94,970,000	94,970,000	94,970,000	94,970,000	332,395,000
		6-10층	3	385,745,080	593,054,920	978,800,000	10,000,000	38,940,000	97,880,000	97,880,000	97,880,000	97,880,000	97,880,000	97,880,000	342,580,000
		11-20층	6	389,646,670	599,053,330	988,700,000	10,000,000	39,435,000	98,870,000	98,870,000	98,870,000	98,870,000	98,870,000	98,870,000	346,045,000
		21층-30층	5	393,548,260	605,051,740	998,600,000	10,000,000	39,930,000	99,860,000	99,860,000	99,860,000	99,860,000	99,860,000	99,860,000	349,510,000
		31층 이상	1	397,449,850	611,050,150	1,008,500,000	10,000,000	40,425,000	100,850,000	100,850,000	100,850,000	100,850,000	100,850,000	100,850,000	352,975,000
84A	102동 4호 103동 4호	1층	1	407,538,810	626,561,190	1,034,100,000	10,000,000	41,705,000	103,410,000	103,410,000	103,410,000	103,410,000	103,410,000	103,410,000	361,935,000
		2층	1	416,209,010	639,890,990	1,056,100,000	10,000,000	42,805,000	105,610,000	105,610,000	105,610,000	105,610,000	105,610,000	105,610,000	369,635,000
		3-5층	4	424,879,210	653,220,790	1,078,100,000	10,000,000	43,905,000	107,810,000	107,810,000	107,810,000	107,810,000	107,810,000	107,810,000	377,335,000
		11-20층	1	433,549,410	666,550,590	1,100,100,000	10,000,000	45,005,000	110,010,000	110,010,000	110,010,000	110,010,000	110,010,000	110,010,000	385,035,000
		21층-30층	1	437,884,510	673,215,490	1,111,100,000	10,000,000	45,555,000	111,110,000	111,110,000	111,110,000	111,110,000	111,110,000	111,110,000	388,885,000
	202동 1,2호	2층	2	418,297,740	643,102,260	1,061,400,000	10,000,000	43,070,000	106,140,000	106,140,000	106,140,000	106,140,000	106,140,000	106,140,000	371,490,000
		3-5층	3	427,007,350	656,492,650	1,083,500,000	10,000,000	44,175,000	108,350,000	108,350,000	108,350,000	108,350,000	108,350,000	108,350,000	379,225,000
		21층-30층	2	440,052,060	676,547,940	1,116,600,000	10,000,000	45,830,000	111,660,000	111,660,000	111,660,000	111,660,000	111,660,000	111,660,000	390,810,000
	105동 4호 106동 4호 107동 1호	1층	3	399,459,760	614,140,240	1,013,600,000	10,000,000	40,680,000	101,360,000	101,360,000	101,360,000	101,360,000	101,360,000	101,360,000	354,760,000
		2층	2	407,932,910	627,167,090	1,035,100,000	10,000,000	41,755,000	103,510,000	103,510,000	103,510,000	103,510,000	103,510,000	103,510,000	362,285,000
		3-5층	7	416,445,470	640,254,530	1,056,700,000	10,000,000	42,835,000	105,670,000	105,670,000	105,670,000	105,670,000	105,670,000	105,670,000	369,845,000
		31층 이상	3	442,219,610	679,880,390	1,122,100,000	10,000,000	46,105,000	112,210,000	112,210,000	112,210,000	112,210,000	112,210,000	112,210,000	392,735,000
	203동 1,2호	2층	1	409,982,230	630,317,770	1,040,300,000	10,000,000	42,015,000	104,030,000	104,030,000	104,030,000	104,030,000	104,030,000	104,030,000	364,105,000
		3-5층	3	418,534,200	643,465,800	1,062,000,000	10,000,000	43,100,000	106,200,000	106,200,000	106,200,000	106,200,000	106,200,000	106,200,000	371,700,000
	301동 4,5호	2층	2	424,524,520	652,675,480	1,077,200,000	10,000,000	43,860,000	107,720,000	107,720,000	107,720,000	107,720,000	107,720,000	107,720,000	377,020,000
		3-5층	3	433,352,360	666,247,640	1,099,600,000	10,000,000	44,980,000	109,960,000	109,960,000	109,960,000	109,960,000	109,960,000	109,960,000	384,860,000
		21층-30층	1	446,633,530	686,666,470	1,133,300,000	10,000,000	46,665,000	113,330,000	113,330,000	113,330,000	113,330,000	113,330,000	113,330,000	396,655,000
	302동 4,5호	3-5층	3	426,928,530	656,371,470	1,083,300,000	10,000,000	44,165,000	108,330,000	108,330,000	108,330,000	108,330,000	108,330,000	108,330,000	379,155,000
		21층-30층	2	448,879,900	690,120,100	1,139,000,000	10,000,000	46,950,000	113,900,000	113,900,000	113,900,000	113,900,000	113,900,000	113,900,000	398,650,000
84B	102동 5호 103동 5호	2층	1	408,721,110	628,378,890	1,037,100,000	10,000,000	41,855,000	103,710,000	103,710,000	103,710,000	103,710,000	103,710,000	103,710,000	362,985,000
		3-5층	6	417,233,670	641,466,330	1,058,700,000	10,000,000	42,935,000	105,870,000	105,870,000	105,870,000	105,870,000	105,870,000	105,870,000	370,545,000
		6-10층	1	421,489,950	648,010,050	1,069,500,000	10,000,000	43,475,000	106,950,000	106,950,000	106,950,000	106,950,000	106,950,000	106,950,000	374,325,000
		11-20층	1	425,746,230	654,553,770	1,080,300,000	10,000,000	44,015,000	108,030,000	108,030,000	108,030,000	108,030,000	108,030,000	108,030,000	378,105,000
		21층-30층	1	430,002,510	661,097,490	1,091,100,000	10,000,000	44,555,000	109,110,000	109,110,000	109,110,000	109,110,000	109,110,000	109,110,000	381,885,000
	105동 3호 106동 3호 107동 2호	2층	3	400,602,650	615,897,350	1,016,500,000	10,000,000	40,825,000	101,650,000	101,650,000	101,650,000	101,650,000	101,650,000	101,650,000	355,775,000
		3-5층	8	408,957,570	628,742,430	1,037,700,000	10,000,000	41,885,000	103,770,000	103,770,000	103,770,000	103,770,000	103,770,000	103,770,000	363,195,000
		31층 이상	3	434,258,790	667,641,210	1,101,900,000	10,000,000	45,095,000	110,190,000	110,190,000	110,190,000	110,190,000	110,190,000	110,190,000	385,665,000

■ 공통 유의사항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분양금액은 사업주체 자체 기준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가구, 가전 등 유상 옵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계좌번호	금융기관	예금주
아파트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1005-704-878471	우리은행	소사3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외
※ 지정된 계약 기간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중도금, 잔금도 본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일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분양계약 체결 시 상גיע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발코니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가상계좌)와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시 - 101동 501호 계약자 → ‘1010501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 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주택전시관에서는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 명의통장 이용 등 계약금 납부 주체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되며 부정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사업주체에서는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 그 결과를 당첨자에게 즉시 통보하며, 당첨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4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5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6.18.(목) ~ 2026.06.27.(토)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6.18.(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예비 입주자) 제출 서류 안내 ※ 아래의 제출 서류는 금회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09.)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사용가능(1. 발급용도 : '기타'선택 → 아파트 계약용 / 2. 제출처 : 'DL이앤씨(주)'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본인 및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전체 포함"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전체 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분 추가 제출 필요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배우자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증빙서류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 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 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 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등(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 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 계약서 등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및 세대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 초본 (전체 포함)	직계존속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 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부적격 소명자료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자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개별통지)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사용가능(1. 발급용도 : '기타'선택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2. 제출처 : 'DL이앤씨(주)'로 설정하여 발급)
	○		인감도장	본인	공급신청자 본인의 인감도장
	○		위임장	본인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 주택에 비치)
	○		신분증, 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당첨자 계약체결

구 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6.06.27.(토) 10:00 ~ 17:00	주택전시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49]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해당서류	비고
공통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인감도장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아파트 계약용 (본인발급분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내역 포함하여 발급
	계약금 입금 영수증	계약금 현장수납 불가
제3자 대리 계약 시 (본인 외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공통서류	상기 공통서류 일체를 계약자 본인이 발급하여 대리인이 제출
	계약자의 인감도장	인감도장 날인 및 대조용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아파트 계약위임용 (계약자 본인발급분에 한함)
	위임장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대리인 도장 날인(서명)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일시 : **2026.06.28.(일) 10:00까지 입장완료** 후 예비순번 순서대로 동·호 배정 (주택형별 진행순서는 추후 공지)
- 각 주택형별 진행시간 입장완료 후 예비순번 순서대로 동·호 배정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시 : **2026.06.28.(일) 동·호 배정 후 즉시 계약**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 유의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 당첨(예비입주자 선정 포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 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 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table><tr><th>조항</th><th>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th><th>주거전용면적</th><th>수도권</th><th>비수도권</th></tr><tr><td>제53조제9호가목</td><td>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td><td>60㎡ 이하</td><td>1억 6천만원</td><td>1억원</td></tr><tr><td rowspan="3">제53조제9호나목</td><td>단독주택</td><td rowspan="3">85㎡ 이하</td><td rowspan="3">5억원</td><td rowspan="3">3억원</td></tr><tr><td>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td></tr><tr><td>도시형 생활주택</td></tr></table>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계약자 대출안내

- 중도금 납부 기일 및 납부금에 대한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지정납부일 이전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여도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모집공고일 현재 비규제 지역에서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분양하는 단지로, 사업주체는 전체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중도금 대출 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 정부정책으로 본 단지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중도금 대출 가능 금액” 이 축소 될 수도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중도금 대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후불제 : 본 사업은 사업주체가 중도금대출 이자후불제로 대출기관 알선할 예정이며, 적격대출 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 납부하여야 입주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에서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계약자의 개인 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융자금액은 향후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금액을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5%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수수료,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금액 납부 조건에 따라 직접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 할수 없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사업주체,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중도금대출 이자후불제에 상응하는 조건을 사업주체, 시공사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사업주체, 시공사는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계약자는 사업주체, 시공사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제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중 선 도래하는 날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예정자의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입주예정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납부기한 내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상담사는 분양 상담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앞당겨지거나 늦춰지는 경우)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는 대출개시일 부터 변경된 대납종료일(입주지정기간 직전 대출이자 납부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의 경우 사업주체가 부도 또는 파산 시 사업주체가 납부 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2곳 이상의 금융기관이 선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금리는 동일한 기준금리+가산금리의 금융권을 알선할 예정이나 은행별 금리적용기준 차이로 총 발생이자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짜까지입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이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보증서 발급 불가 등) 또는 제반사정(관련 법률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 금융시장 변화 등)에 따라 불가 또는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 불가 또는 대출한도 축소를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실행 후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등)으로 인해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지 등에 따라 분양대금이 완납 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 기관으로 선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 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한도는 계약자 사정,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 종류 등에 따라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계약자는 사전에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 일정은 정부 정책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 납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주택자, 법인,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에 따릅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제1조 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세액(균등 납부)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사업주체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 발코니확장계약서와 추가선택품목계약서 II, III는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제1조 제2항에 의거 시공사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각각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세액(각각 납부)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사업주체 or 시공사 부담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계약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우체국, 은행)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1577-55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세부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6.04.23.)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 시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분	사업주체 및 시행자	시공사	
상호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롯데건설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121171-0002603	110111-7736808	110111-0014764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563, 2층(소사동, 수협빌딩)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65, 에이동 (마곡동, 원그로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4길 29 (잠원동)

- 주택전시관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49번지
- 분양문의 032-323-1649
-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elife.co.kr>

-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분양사무실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기재사항의 오류 및 이 공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건축법」 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부천시 새로운 브랜드 타운의 시작을 여는 소사 더블초역세권의 대단지 프리미엄



소사 더블 초역세권 생활에
부천역 중심상권 및 의료인프라,
e편한세상의 브랜드 가치까지,
남다른 규모의 프리미엄 라이프

소사역과 부천역의 인프라와
미래가치를 모두 누리는 입지

- 1호선, 서해선의 더블 역세권인 소사역으로 2·5·7·9호선과 공항철도까지, 뛰어난 서울연결성과 환승접근성
- 마곡, 여의도, 광화문, 구로, 가산, 강남, 서울역까지, 서울 주요 업무지구들과 연결되는 광역 교통망
- GTX-B노선으로 상승하는 가치
- 소사역 일대 개발로 형성되는 신흥 브랜드타운의 미래가치

1,649세대 대단지의 위상을 높이는
독보적인 특화설계와 1등 품질

- 사우나, 게스트하우스, 실내골프연습장 등 부천시 내 최고 수준의 커뮤니티
- 특화조경 브랜드 '드포엠(dePoem)'으로 더해지는 4계절의 풍경
-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혁신 평면 c2house
- 단지·세대 내의 공기질을 관리해주는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 적용
- 4년 연속 하자판정 0건 및 TOP 10 시공사 중 품질관리 1위
(출처 : 국토부 하자심사 분쟁조정 위원회, 2025년 시공능력평가)

※ 본 홍보물의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입면 등 외관 및 색채계획, 창호계획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부속동의 석재 및 색채 등의 외관 디자인 계획은 향후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광역교통으로 출퇴근은 짧게
서울-부천 생활권은 더 크게



* 본 홍보물의 일러스트(그림)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개발계획은 사업주체, 국가기관, 지자체 및 기타 기관의 사업추진 중 변경, 지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GTX-B노선 30년 부동간행(국토부 보도자료 24.10.16) * 소사-서1-7구의 한강연평항가 결정후에 공개공고(내선식 고시 제2024-277호) * 소사-서1-7구의 정비비확립 및 정비구역 지정(부천시 고시 제 2024-239호) * 10.15 부동간행(국토부 보도자료 -주목식산 안전관리대책 2025.10.15)

교통·상업·의료 인프라가 모인
단지 바로 앞 더블 초역세권

- 1호선, 서해선 더블 역세권 소사역으로 2·5·7·9호선은 물론 공항철도까지 빠르게 연결되는 광역 교통망
- 마곡, 여의도, 광화문, 구로, 가산, 강남, 서울역까지 뛰어난 서울 연결성과 환승 접근성
- 부천역 상업 인프라와 다수의 의료 인프라를 도보로 이용

한정된 기회를 선점하는 부천시 신중심과 비전

- 청량리까지 30분 이내에 이동 가능한 GTX-B노선 (31년 개통 예정)
- 소사1~1구역, 소사본1~1 구역 등 소사역 일대 정비사업 예정으로 부천시 신흥 주거브랜드타운 중심입지
- 10·15 부동산 대책 비규제 수혜 단지

대규모 스케일과 특화설계로 완성하는
1,649세대 대단지 프리미엄

- 사우나, 게스트하우스, 실내골프연습장 등 부천시 내 최고 수준의 커뮤니티
- 특화조경 브랜드 ‘드포엠(dePoem)’으로 더해지는 4계절의 풍경
- 주거생활에 최적화된 혁신 평면 C2 HOUSE
- 단지·세대 내의 공기질을 관리해주는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 적용

높은 만족도와 신뢰를 자랑하는
No. 1 브랜드 라이프

- 업계 최고 수준의 안정성과 품질관리 역량을 갖춘 DL이앤씨 (25년 신용등급 AA-, 4년 연속 하자판정 0건)
- 품질편차 걱정없는 'e편한세상'의 단일 브랜드 대단지
- 소비자가 선택한 최고의 브랜드 대상 5년 연속 수상 (조선일보)
-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총 14회 수상 (디지틀조선일보)

※ 상기 개발계획은 사업주체 등에 의해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의 세부 적용사항은 본 공사 시 또는 각종 심의 및 협의 등의 안·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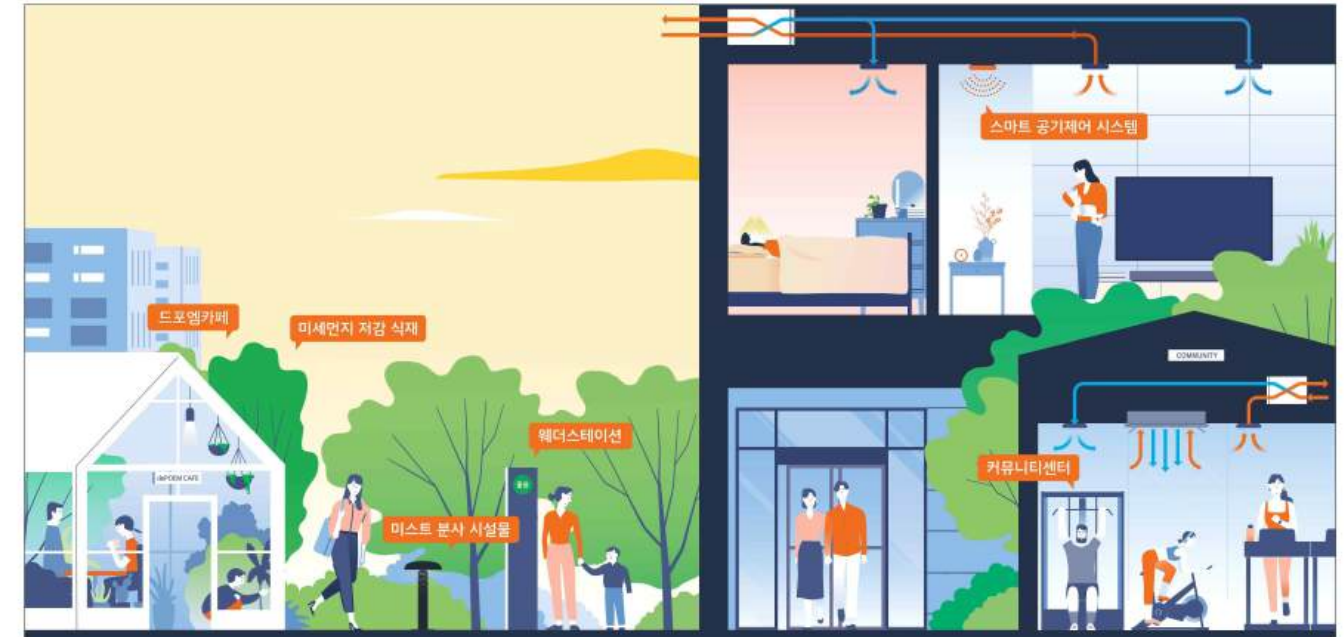
※ 'No.1 브랜드' 관련 근거는 스마트 아파트 4년연속 1위 '비즈빅데이터 연구소, 24년도 기준'을 참고하였습니다.

※ '4년 연속 최다인원 0건' 관련 근거는 국토부 하자심사부설조정위원회의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밖에서도, 안에서도 공기질 걱정 없는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



Smart Clean & Care Solution



미세먼지 저감 식재

미세먼지 저감 식재가 공기를 정화해주면서
단지 내 공기를 맑게 해줍니다.

스마트 공기제어 시스템

스마트 공기제어 시스템은 실내 공기질을
자동으로 관리하여 신선한 공기를 유지합니다.

미스트 분사 시설물

미스트가 공기 중의 미세먼지를 가라앉혀 단지 내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줍니다.

키즈라운지

미세먼지 많은 날에도 쾌적한 키즈라운지로
걱정없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습니다.

웨더스테이션

단지 내 웨더스테이션이 설치되어
미세먼지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포엠카페

드포엠카페가 있어 단지 내에서도
미세먼지가 없는 자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는 만능이 아닙니다.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만 걸러줄 뿐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산화탄소 등은 배출이 안됩니다.

- ① 통합 공기질 센서**
거주자가 신경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공기질이 관리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CO₂를 감지합니다.
- ② 환기연동 렌지후드**
기존의 렌지후드와 달리 미세먼지는 빨아들이고 맑은 공기는 채워주는 자동 환기를 통해 주방 공기를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 상기 일러스트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에 표현된 미세먼지 저감 식재, 미스트 분사 시설물, 웨더 스테이션, 스마트 공기제어 시스템, 키즈라운지, 돌핀 공기길 세서는 건축설계변경 또는 그외의 사유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배치도



※ 본 홍보물의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 본 홍보물의 단지배치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녹지, 공원 등)과 도시기반시설(교통시설, 출입구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정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사업주체의 개발계획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와 무관합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조경 및 조경수,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은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위치나 규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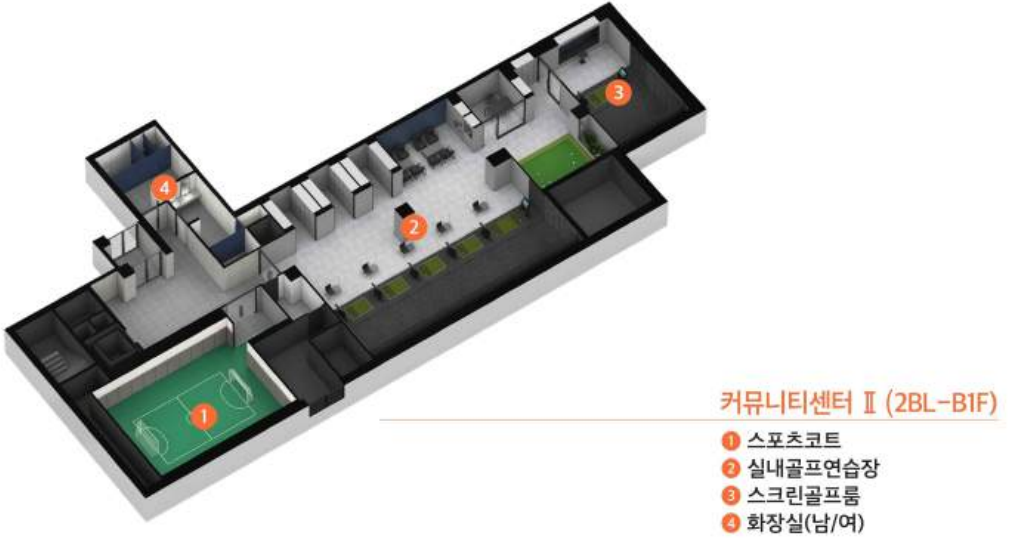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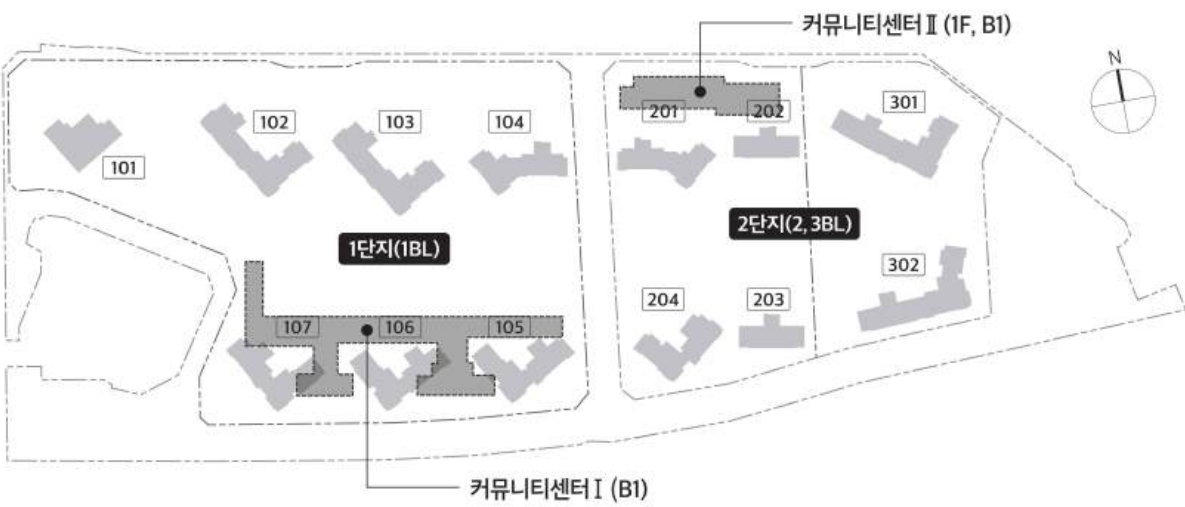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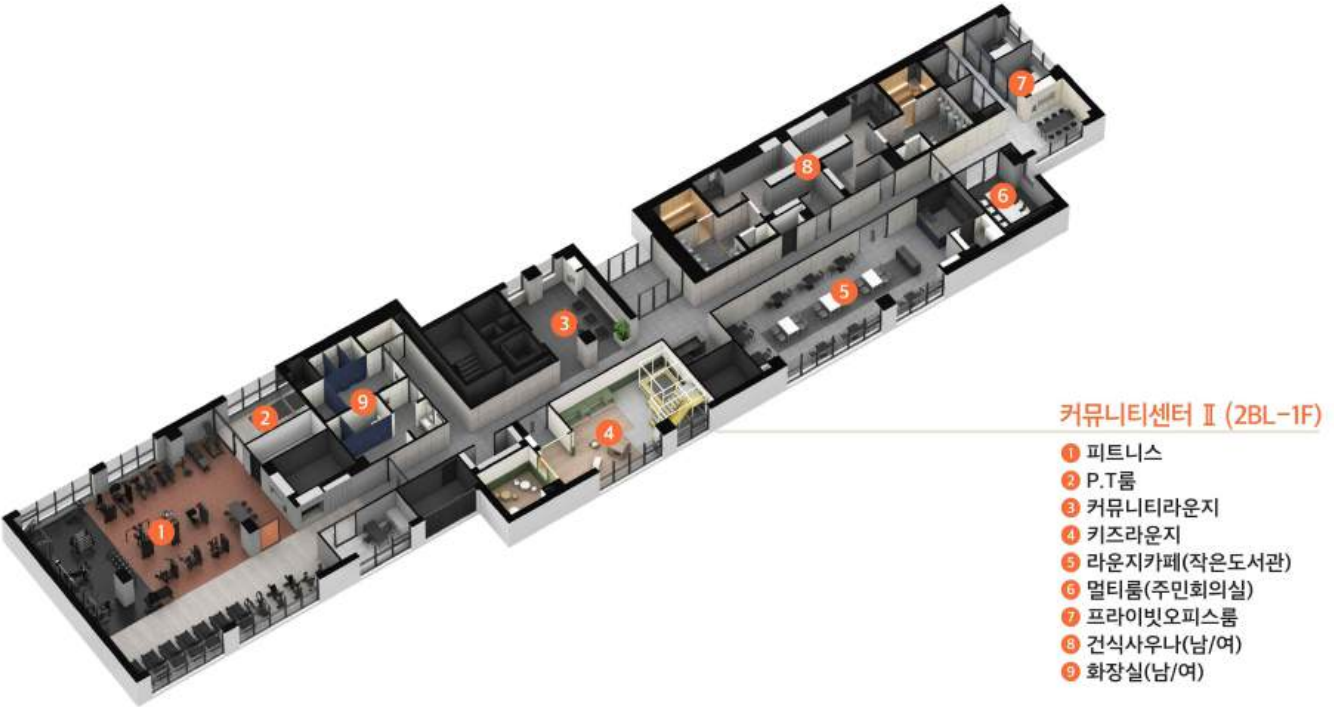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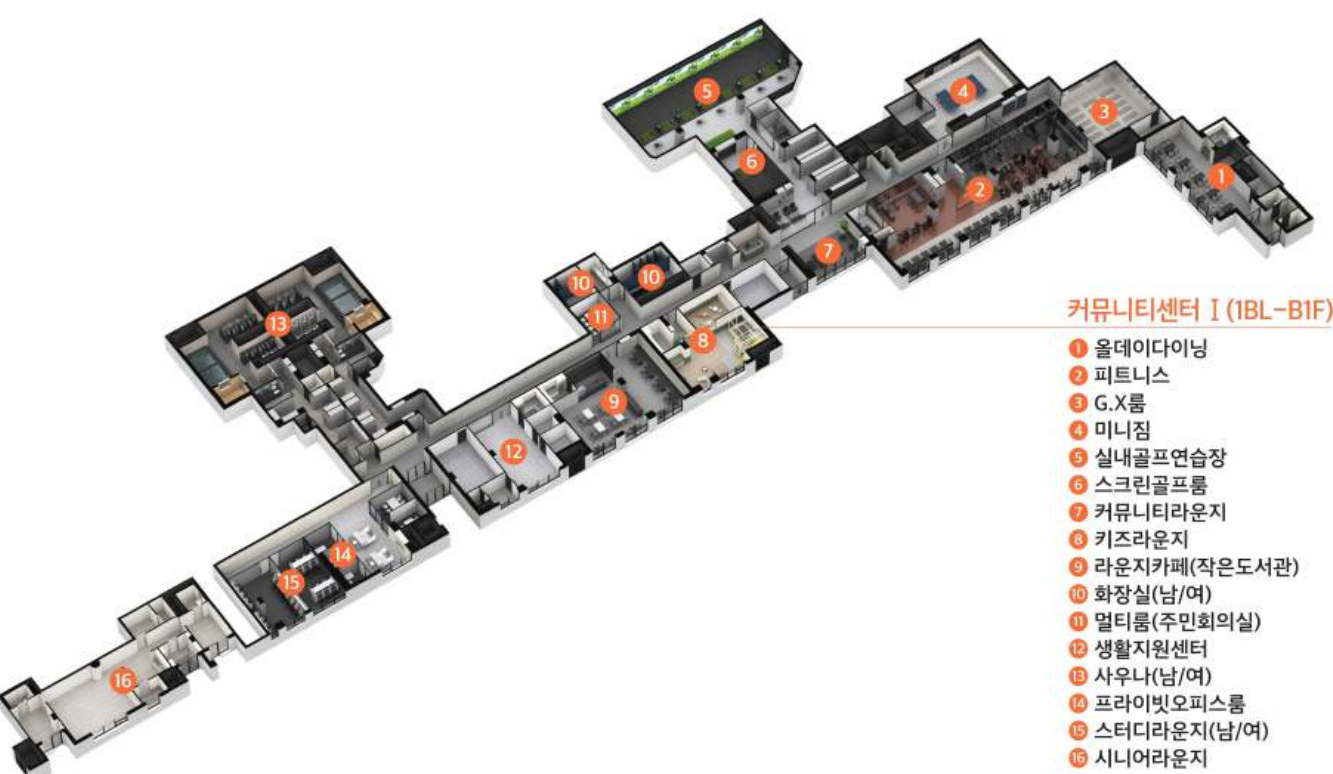
동호수배치도



※ 본 홍보물의 동·호수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단지의 규모만큼 모두의 라이프스타일을 풍성하게 채워내는 프리미엄 커뮤니티



※ 본 홍보물의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추후 공사 시 부대복리시설의 면적 및 형태, 구성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분양 시 제공된 정보와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지의 규모만큼 모두의 라이프스타일을 풍성하게 채워내는 프리미엄 커뮤니티



※ 본 홍보물의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입면 등 외관 및 색채계획, 창호계획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부속동의 석재 및 색채 등의 외관 디자인 계획은 향후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내골프연습장



라운지카페(작은도서관)



사우나



프라이빗오피스룸

※ 본 홍보물의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추후 공사 시 부대시설의 면적 및 형태, 구성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이 발생될 수 있으며, 분양 시 제공된 정보와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홍보물의 부대시설 내부 이미지 중 일부는 타 단지의 동일시설 이미지를 활용한 것으로 본 분양 단지의 적용 사항과는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길게 뻗은 숲길과 공원처럼 다채로운 풍경이 펼쳐지는 특화조경 드포엠



※ 본 홍보물의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입면 등 외관 및 색채계획, 창호계획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부속동의 석재 및 색채 등의 외관 디자인 계획은 향후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드포엠파크(1단지)



드포엠파크(2단지)



드포엠카페



미스티포레

※ 본 홍보물의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입면 등 외관 및 색채계획, 창호계획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부속동의 석재 및 색채 등의 외관 디자인 계획은 향후 실제 시공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과 부대시설 출입구, 창호, 주차램프 출입구 및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의 입면 디자인 및 레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생활, 동선, 수납 등 모든 주거경험을
고려한 혁신평면 C2 HOUSE 적용

59㎡A TYPE

일반분양 374세대

전 용 면 적	59.9000㎡
주거공용면적	21.5763㎡
공 급 면 적	81.4763㎡
기타공용면적	43.7695㎡
계 약 면 적	125.2458㎡



59㎡B TYPE

일반분양 107세대

전 용 면 적	59.7700㎡
주거공용면적	22.3611㎡
공 급 면 적	82.1311㎡
기타공용면적	43.6746㎡
계 약 면 적	125.8057㎡



84㎡A TYPE

일반분양 73세대

전 용 면 적	84.3400㎡
주거공용면적	29.6187㎡
공 급 면 적	113.9587㎡
기타공용면적	61.6282㎡
계 약 면 적	175.5869㎡



84㎡B TYPE

일반분양 27세대

전 용 면 적	84.6000㎡
주거공용면적	29.5690㎡
공 급 면 적	114.1690㎡
기타공용면적	61.8181㎡
계 약 면 적	175.9871㎡



74㎡A TYPE

일반분양 208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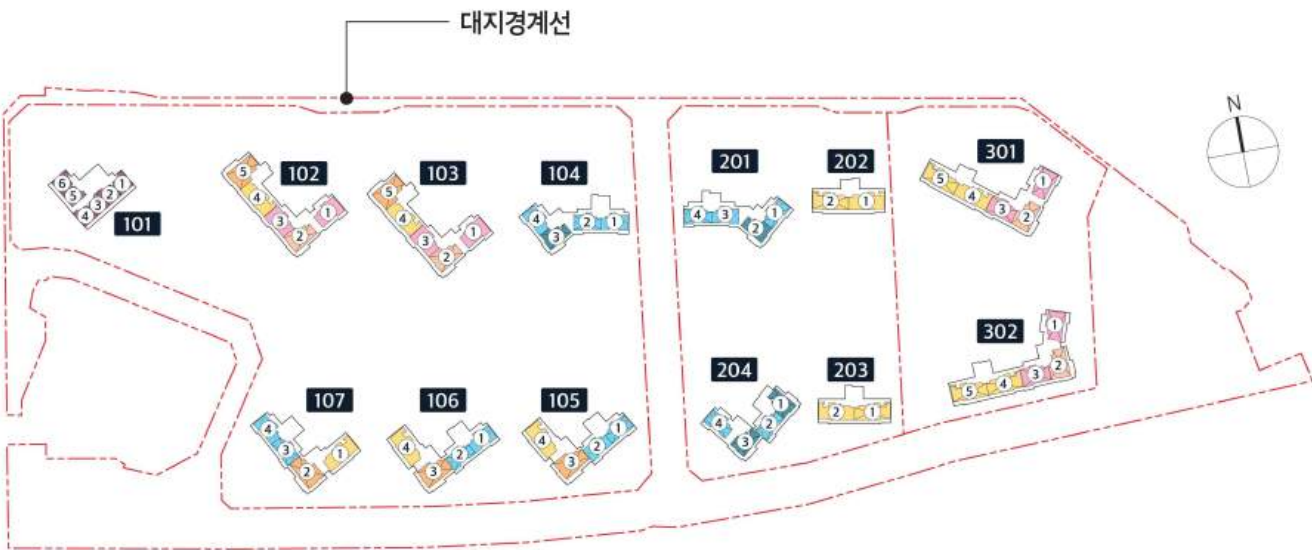
전 용 면 적	74.6300㎡
주거공용면적	25.8916㎡
공 급 면 적	100.5216㎡
기타공용면적	54.5330㎡
계 약 면 적	155.0546㎡



74㎡B TYPE

일반분양 108세대

전 용 면 적	74.3000㎡
주거공용면적	26.6223㎡
공 급 면 적	100.9223㎡
기타공용면적	54.2918㎡
계 약 면 적	155.2141㎡



※ 본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건축설계변경 또는 그 외의 사유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품목은 분양가 제외 품목이오니 주택전시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의 설계내용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건축설계변경 또는 그 외의 사유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품목은 분양가 제외 품목이오니 주택전시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의 설계내용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